

# “사업장 안전감독기관 너무 많다”

## 안전관련 법령·감독기능의 통합 건의

- 대한석유협회 -

현재 각급 안전관련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지도감독업무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 실시되고 있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술과 정보·장비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한 기업의 과중한 인적·물적 부담으로 안전관계 법령과 감독기관의 통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안전관련 법규의 중복·과다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안전관련 업무를 선진국에서처럼 통합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석유협회는 현재 제조업체들이 동일 사업장내에 보일러·전기설비·반응기 및 각종기계 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공공설비·저장설비·출하설비등이 다양하게 조합된 일련의 연속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일 법령에 따라 유사한 인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하는 데다가 각 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된 감독기관에 의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인해 인적·물적 부담이 과중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련 법령과 감독기관을 보면 ①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산업안전공단),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가스안전공사)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④전기사업법(산업자원부·전기안전공사) ⑤소방법(행정자치부·소방서·소방검정공사) ⑥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⑦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환경부·지방환경청) ⑧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재정경제원·화재보험협회) 등 다양한 법령과 감독기관들에 의해 중복 규제되고 있는 실

정이다.

석유협회는 안전점검의 경우,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전기사업법등 여러 법규 관련 규제 대상인 다양한 일련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규별로 1~4년의 주기로 각기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수검을 위해서는 약 1년 주기로 전체 공정의 가동을 중지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들은 생산시설이 중단없이 장기간 연속운전 될 수 있도록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의 운전 정비 및 안전관련 자체 인력을 통한 우수한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한 외국의 동종 업체와 같은 수준의 생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각종 검사주기의 완화·조정을 통해 정기보수주기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동일 사업장내에 소재하는 연관된 일련의 설비로 구성된 제조업체의 안전관리는 유사한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행정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종 안전가스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최근 서방선진국들이 유사한 법령 및 감독체계를 통합하여 성공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IMF 금융지원을 받았던 1970년대 초 이전에는 5개 행정부처 및 7개 감독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장의 안전관련 감독업무를 각각 별도로 수행해 왔으나, 1974년에 관계법령과 감독기관을 과감히 통합하여 감독업무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다. ☺